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보건
(063) 720-2571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예) 엘리베이터 등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 ▶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 ※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세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 참고: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 지침 준수

2023. 2. 1.

이 리 영 등 초 등 학 교 장